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2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806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교회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4. 5.
판 결 선 고	2016. 5. 17.

주 문

1.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7,096,890원, 지방교육세 10,134,790원, 농어촌특별세 7,262,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2

가. 원고는 2011. 12. 20. 원고의 장로인 B와 C으로부터 그들이 각 1/2씩 공유하는 양주시 D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증여받고, 2011. 12.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의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 후 원고와 B, C(이하 'B 등'이라고 한다)은 B 등 가족들의 반대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redacted]은행 및 [redacted] 주식회사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채권최고액 합계 25억 원 정도에 달하였다) 문제로 인하여 2012. 4. 23.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뒤 2012. 4. 2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4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B 등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주었고 주식회사 E이 B 등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 중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7. 16. 원고에게 취득세 127,096,890원, 지방교육세 10,134,790원, 농어촌특별세 7,262,67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증여자 가족들의 반대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 문제로 부득이하게 증여받은 때로부터 4개월 만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증여자에게 원상회복하여 준 것일 뿐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판단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와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뒤 원상회복을 위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준 것을 두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2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교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자 측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와 같이 증여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증여자가 가족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요구할 경우 증여계약의 무상성,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특별한 관계 등에 비추어 수증자가 증여자의 해제 요구를 거절하기는 사회통념상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향후 증여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합의해제 되자마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교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달리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2

판사 김종신

판사 현영주